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65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이재강·김우영·김문수

허성무 • 이재정 • 박희승

이성윤・윤종군・윤건영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단지 등의 물품의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usb 등의 물품은 내용물에 대한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어 국가 안보에 큰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 악화와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제15조의2·제2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살포"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살포의 승인) ① 물품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살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살포를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포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살포를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살포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살포를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살포를 승인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남북교류 ·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살포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0 (5) 5) -1 -1 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 3의2. "살포"란 선전, 증여 등</u>
	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u>행위를 말한다.</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5조의2(살포의 승인) ①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살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u>다.</u>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살포를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

- 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포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살포를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 의 품목, 살포 방법 등에 관하 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 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살포를 승인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살포를 승인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경우
-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 한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6. (생 략)

②・③ (생 략)

제27조(벌칙) ①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
을 살포한 자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